이 보도자료는 2020. 6. 21.(일) 14: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

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부장검사 장성훈

전화 031-475-4003/ 팩스 031-481-4510

보 도 자 료

2020. 6. 19.(금)

제 목	**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1,200억 원대 투자금 편취 및 유사수신 사건 수사결과** **-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등 2명 구속 및 이사 4명 불구속 기소-**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-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(형사3부 부장검사 임세호)은 **"ㄱ" 그룹 및 "ㄴ"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**하면서, 미끼사업인 중국 건강검진사업, 무한동력 사업 등을 진행하여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, 원금보장을 약정하면서 수천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로부터 1,209억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한 "ㄱ" 그룹 및 "ㄴ" 가상화폐 거래소 **운영자 2명을 구속 기소**하고, **이사 4명을 불구속 기소**함

1 피고인

- 피고인
  - A○○(46세, 지명수배 중, "ㄱ" 그룹 회장)
  - B○○(59세, 구속기소, "ㄱ" 그룹 부회장, "ㄴ" 거래소 대표)
  - C○○(58세, 구속기소, "ㄱ" 그룹 그룹장, "ㄴ" 거래소 부사장)
  - D○○(51세, 불구속기소, "ㄱ" 그룹 총괄이사)
  - E○○(47세, 불구속기소, "ㄱ" 그룹 이사)
  - F○○(49세, 불구속기소, "ㄱ" 그룹 이사, "ㄴ" 거래소 상무)
  - G○○(43세, 불구속기소, "ㄱ" 그룹 이사, "ㄴ" 거래소 이사)

2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

-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'17. 5. ~ '20. 4. "ㄱ"그룹에서 **미끼사업**인 중국 건강검진사업, 무한동력 사업 등을 진행하여 큰 수익이 생길 것처럼 홍보하고,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어 코인 자체만으로는 가치가 없는 "ㄷ"코인 등 다수의 가상화폐를 순차적으로 제작·판매하면서,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"ㄴ"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시켜 가격을 펌핑(Pumping)[1]시킨 후 가격이 하락하면 상장폐지하고, 다시 "ㄹ"코인을 제작·판매하고 펌핑시키는 등 **속칭 코인 돌려막기 방식**으로 원금보장을 약정하면서 코인을 판매하여 피해자 약 2,700명으로부터 약 1,209억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하는 방법으로 **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, 사기,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]**

<피고인들의 역할 분담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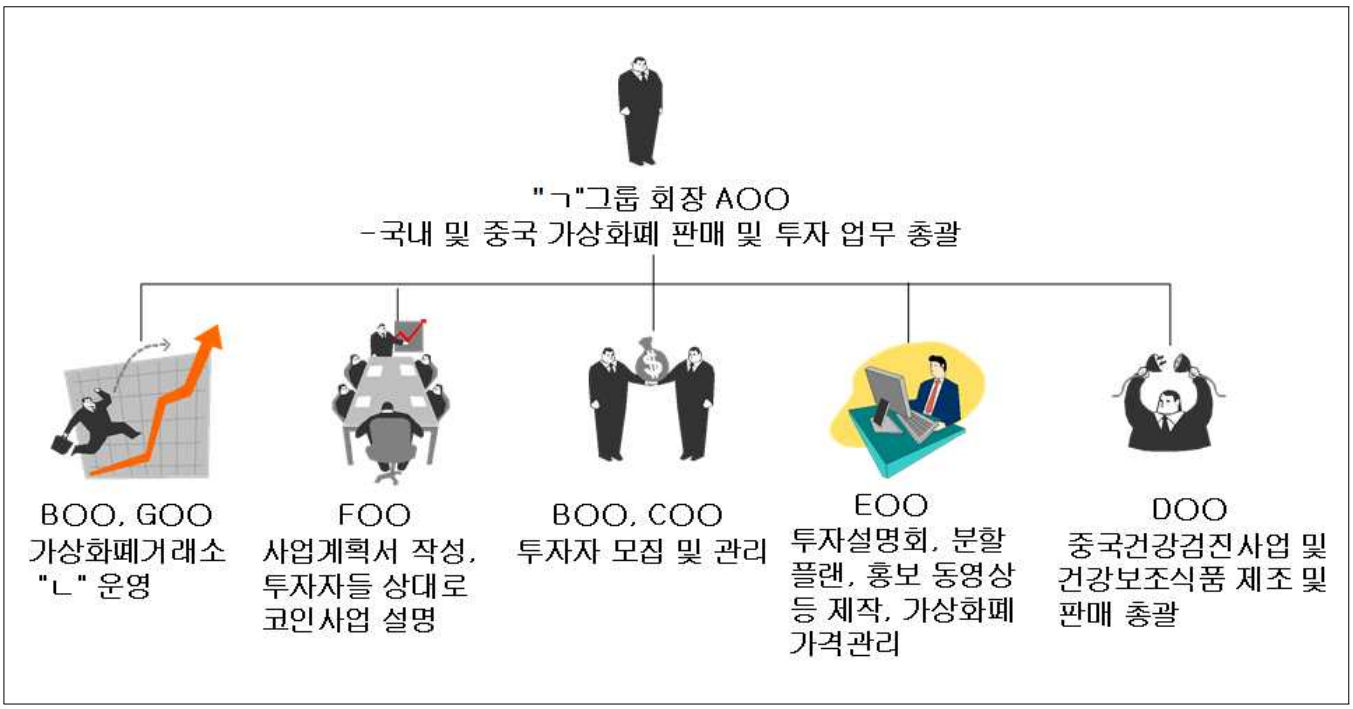

1) 펌핑(Pumping)은 가상화폐를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시키거나 일시적 호재를 발표하여 가상화폐의 가격을 부풀리는 것을 뜻함

3 수사 경과

- 2020. 3.경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사첩보 접수, 대검 가상화폐 감정 등

※ **대검 사이버수사과**, "ㄱ" 그룹의 가상화폐는 특별한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감정

- 2020. 4.~5.경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

※ 2019. 1.경 공중파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"ㄱ" 그룹이 가상화폐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방영된 것을 확인

- 2020. 6. 1. 주범 B○○, C○○ 체포 및 압수수색

※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주범 B○○, C○○을 체포함

- 2020. 6. 3./4. 주범 B○○, C○○ 구속영장 청구/발부
- 2020. 6. 19. 주범 B○○, C○○ 구속 기소 및 이사 4명 불구속 기소 등

4 참고사항

- 가상화폐의 대중화로 누구나 '유튜브' 동영상만 보고 따라하면 몇 천 원으로 수백억 개의 코인을 쉽게 제작할 수 있으므로, 막연히 거래소에 상장되면 가격이 오른다거나 사업내용을 과장하여 홍보하는 업체에 투자시 주의할 필요가 있음
- 검찰은 앞으로도 블록체인 등 과학기술 발전에 맞춰 진화하는 가상화폐 등 핀테크(Fin Tech) 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예정임 ▧